

제2장

**여성, 평화, 안보의 국제규범 형성과 확산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호를 중심으로**

**The Formation and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Norms
on Women, Peace, and Security —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강윤희 |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부교수

여성·평화·안보의 국제규범 형성과 확산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인식 재고 및 관련 국제정치학 연구 촉진

페|ㅁ|니즘

국제정치학이 여성의 경험을 반영하고 여성의 관점에서 본 국제정치학을 주창하였듯이, 유엔은 여성의 경험을 포함하고 여성을 주체로 상정하는 국제규범을 만들고 있다. 특히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호는 전시 성폭력 근절, 평화 구축에 여성의 참여를 강조하는 획기적인 것이었다. 이는 무력분쟁과 평화 구축을 남성들의 점유물로 간주하였던 기존의 시각을 뒤집는 것이었다. 1325호 결의안 채택 과정은 국제기구(UN)와 국제비정부기구(여성단체들과 인권단체들)가 글로벌 거버넌스를 이룬 전형적인 사례였다. 그러나 1325호 결의안의 실행은 추가 결의안의 채택, 실행 결과 모니터링 등에도 불구하고 결코 쉽지 않았고 실제 국제정치 관행을 바꾸는 데 성공하지 못하였다. 결국 유엔은 개별 국가별로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채택하도록 권고하였고 현재까지 40여 개국이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글은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국제규범이 유엔 차원에서 어떻게 형성되며 이것이 개별 국가 차원으로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분석한다.

For many years, the specific situations, roles, needs, and rights of women during and after armed conflict had remained unaddressed. Therefore, the adoption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SCR 1325) in 2000 was celebrated as an important milestone. SCR 1325 marked the first time that the Security Council addressed the disproportionate and unique impact of armed conflict on women and recognized the undervalued and under-utilized contributions women make to conflict prevention, peacekeeping, conflict resolution and peace-building. It underlined the importance of women's equal and full participation as active

agents in keeping peace and maintaining security. Indeed, the adoption of SCR 1325 marked an important international political recognition that women are relevan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Since its adoption, some progress has been made as the UN adopted system-wide action plans and NGOs undertook awareness-building and advocacy efforts with respect to SCR 1325. However, admittedly, the progress has been extremely slow. Following the criticism that the Security Council's approach undervalued the importance of the activities of UN member states, the UN strongly recommended that member states adopt their own National Action Plan on Women, Peace, and Security. So far, 40 nation states have adopted or revised National Action Plans. This paper illustrates the process of the formation and spread of international norms on women, peace, and security by focusing on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their implementation.

KEY WORDS 여성 women, 평화 peace, 안보 security, 국제규범 international norm,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UN Security Council,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국가행동계획 National Action Plan on Women, Peace, and Security, 무력분쟁 시 젠더에 기초한 폭력 gender-based violence in armed conflict

I 여성, 평화, 안보의 삼각 관계

국제정치학에 페미니즘 관점이 도입된 지 벌써 20년도 넘는 시간이 흘렀다. 그간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자들은 국제정치의 제반 이슈 영역에 성 인지적 관점을 도입하여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였다. 특히 국제정치학의 핵심 이슈인 안보 문제에 대해 페미니즘 시각에 입각한 비판을 제기하고 기존 국제정치학 개념의 재정의(reformulation)를 시도한 것(Tickner 1991)은 매우 주목할 만한 작업이었다.

사실 전쟁과 평화, 안보 문제에 있어서 그간 여성은 존재하지 않는 듯 취급되었다. ‘국가 간의 물리적 충돌’로 정의된 전쟁에 있어서 주된 전투원은 남성으로 상정되었고 여성은 남성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존재에 불과할 뿐 전쟁과는 무관한 존재로 간주되었다(강윤희 2011, 252). 외교 및 국방 분야의 정책결정자의 대부분이 남성인 상황하에서 이러한 시각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여성의 실질적인 역할과 피해 정도와 무관하게 전쟁과 평화는 여성과 무관한 영역인 듯이 간주되어왔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발생한 최근의 분쟁 양상은 이러한 시각에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특히 국지적 분쟁과 내란이 빈번하였던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무력분쟁이 여성에게 미치는 차별적 영향은 매우 분명하게 드러났다. 전투원, 비 전투원의 구별이 없어진 현대전에서 여성 및 어린이의 피해는 전투원의 피해보다 일반적으로 더 크다. 이뿐 아니라 인종, 민족 간의 물리적 충돌은 종종 여성에 대한 전시 성폭력(sexual violence

in conflict) 사태를 동반하였다. 따라서 국가 간, 그리고 국가 내부에서 발생하는 무력분쟁은 여성의 삶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바로 이러한 배경하에 여성들은 지역 분쟁 해결 및 평화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1990년대 이후 아프리카와 중동 등 분쟁 지역에서 지구적 차원의, 혹은 일국 및 지역적 차원의 여성조직들이 평화와 안전 활동 그리고 전략적 옹호 활동을 펼침으로써 평화 정착 및 분쟁 후 평화 구축 과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2011년 라이베리아의 엘렌 존슨 셀리프와 리마 보위, 그리고 예멘의 타와크 카르만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것은 바로 이러한 노력에 대한 국제적 인정이라고 할 수 있다. 라이베리아 내전 시 여성을 주축으로 한 평화운동을 이끌었던 엘렌 존슨 셀리프는 라이베리아 대통령으로 선출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평화 구축자로서 여성의 부각되는 현상은 여성과 평화 문제가 결코 별개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은 전쟁과 평화, 안보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 여성(과 소녀)들이 그들의 젠더로 인하여 각종 분쟁으로부터 차별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들을 분쟁 과정에서 보호하고 평화 구축 및 정착 과정에 이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국제적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는가?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평화, 안보에 관한 국제적 규범과 관행에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가?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다행스럽게도, 유엔은 여성과 평화, 안보 문제를 간과하지 않았다. 2000년에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이하 UN SCR 1325)는 그 대표적인 성과물이다. 이 결의안은 안전보장이사회가 무력분쟁이 여성에게 미치는 불균형적이고 독특한 영향을 인정한 최초의 문건이다. 또한 분쟁 예방, 평화 유지, 분쟁 해결, 평화 구축 과정에서의 여성의 기여가 과소평가되었던 점을 인정하고 평화와 안보를 위한 여성의 동등하고 완전한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안전보장이사회가 그간 분쟁과 안보 문제에 대해 국가 중심적 접근을 취하였던 점을 고려해볼 때, 1325 결의안의 채택은 실로 획기적인 것이었다. 이 결의안이 채택되었을 때, 전 세계 여성운동계는 환호하였고 국제정치가 친여성 주의적으로 변모하리라는 기대감은 팽배하였다.

그러나 1325호 채택 후 10여 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보면, 이러한 기대감은 너무 낙천적인 것이었다. 추가 결의안의 채택, 1325호 이행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 제출 등에도 불구하고 1325호는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였다. 2000년대 들어 와서 분쟁이 발생한 지역, 즉 수단, 다르푸르 분쟁 지역, 코트디브아르 등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태는 여전히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일어났다. 한편 평화 조성 및 구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하는 목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성은 평화 협상 테이블(peace table)에 거의 부재하며, 대부분의 갈등 지역에서 제3자 조정자, 혹은 UN 대표로서 상당히 과소대표되어 있다”는 2009년 UN 사무총장의 보고서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 2009, 4).

그러나 UN SCR 1325를 당위론으로만 가득 찬 실행 불가능한 문서로 치부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일 수 있다. 1325호 채

택 10주년을 맞아 다시금 이 결의안의 중요성 및 실행 가능성에 대해 UN 및 국제사회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여성개발기금(UNIFEM)은 “1325+10 여성의 평화를 책임진다(Women Count for Peace)” 캠페인을 진행 중이며, 각 개별 국가들은 UN의 권고에 따라 1325호 실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채택 혹은 개정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UN SCR 1325를 여성, 평화, 안보의 대표적인 국제규범으로 상정하고 UN SCR 1325의 채택과 실행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UN SCR 1325의 핵심 내용과 실행 체계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UN SCR 1325의 문제점과 의의, 국내 수용 과정, 국제정치적 함의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여성, 평화, 안보의 국제규범 형성 배경

2000년대에 들어와 여성, 평화, 안보의 국제규범이 UN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안의 형태로 성문화된 것은 탈냉전 이후 급격히 변화하는 국제정치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1990년대에 구 유고슬라비아 내전을 위시하여 여러 지역에서 인종과 민족에 기반한 내전이 발생하였고 그 가운데 여성의 피해, 특히 성폭력에 의한 피해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기존의 안보 개념을 넘어서서 여성의 안보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평화·안보 이슈가 여성운동의 주요 이슈가 되고 폐미니즘 평화, 안보 논의가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절에서

는 여성, 평화, 안보의 국제규범 형성의 현실적 배경을 다룬다.

1. 전시 성폭력 문제의 가시화

전시 성폭력의 문제는 기실 그 역사가 매우 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 성폭력 문제가 국제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상대적으로 매우 최근의 일이다. 주지하다시피, 1990년대 초반 구 유고슬라비아 내전 시 조직적으로 자행된 대규모 강간은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1990년대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지역분쟁 및 내전의 경우 대부분 여성과 소녀들, 그리고 종종 남성과 소년들에 대한, 성폭력 사례를 포함하였는데,¹ 그 피해 규모나 잔혹성은 국제 사회를 놀라게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자행된 대량 강간,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 문제와는 달리, 1990년대의 전시 성폭력 문제는 여론을 통해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졌고 이슈화되었다.

흔히 전시 강간은 승자의 ‘전리품’으로 간주되었고 전쟁으로 인해 억제되었던 남성들의 성적 욕구 해소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왔다. 그러나 1990년대의 전시 성폭력 사태는 전시 강간이 주체 못 하는 남성군인들의 개별적 성적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전시 강간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그리고 대

1 1990년대에 아프리카 지역은 9개의 전쟁 및 여러 개의 대규모 무력분쟁을 겪었다. 라이베리아(1차 내전: 1989~1996년, 2차 내전: 1999~2003년), 르완다(내전 1990~1993년, 대학살 1994년), 시에라리온(1991~2002년), 콩고(1차 내전: 1996~1997년, 2차 내전: 1998~2003년), 부룬디(1993~1999년) 내전 시 심각한 수준의 성폭력 사례가 발생하였다.

규모로 자행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전시 강간 및 성폭력이 적군의 남성과 여성을 모욕하고 민족정체성을 더럽히는 전쟁 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조직적, 계획적 전시 강간은 특히 민족 간 분쟁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보스니아 사태 시 세르비아 정부군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보스니아 무슬림 여성들을 강간하였는데, 1992년 한 해 동안에만 피해 여성의 수는 2~6만 명에 이르렀다. 당시 보스니아에는 여성들을 억류해 놓고 장기간에 걸쳐 강간을 자행한 강간캠프가 설치되었는데, 이러한 강간캠프는 19군데나 존재했다고 한다. 강간캠프는 지역 세르비아 민병대의 도움으로 설치되었으며 무슬림 여성들 대부분은 자신들의 이웃이었던 세르비아인에 의해 강간되었다. 뿐만 아니라 유엔군들도 세르비아군이 운영하는 강간캠프에서 회교도 및 크로아티아 여성들을 강간한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신화 2004, 131-132).

1996~1999년에 발생한 코소보 전쟁에서도 세르비아군의 알바니아계 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발발했다. 세르비아군은 코소보로부터 알바니아계 주민들을 쫓아내는 전략의 일환으로서 젊은 여성들을 강간하였다. 준군사조직에 의해 강간이 자행되었던 보스니아의 경우와는 달리, 코소보에서는 수적 열세에 있는 세르비아인들이 알바니아계 주민들에게 그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젊은 여성들을 골라내어 강간, 임신시켰다.

1994년 르완다 대학살 사건²에서도 후투족의 투치족 여성에

2 1994년 후투족 출신 대통령이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하자 이후 3일간 후투족의 투치족에 대한 대학살이 자행되었다. 약 2만 명의 투치족, 혹은 투치족으로 보이

대한 강간과 성적 공격이 자행되었다. 대학살 과정에서 일어난 투치족 여성에 대한 성적 공격은 부수적으로 발생한 대학살의 2차적 결과가 아니라 르완다 대학살의 핵심적 부분을 차지하였다. 후투족 지도부는 투치족에 대한 후투족의 반감을 자극하기 위해 투치족 여성들을 겨냥한 프로파간다를 적극적으로 펼쳤는데, 그 내용은 투치족이 후투족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투치족 여성들은 후투족 남성들에게는 너무 과분한 존재라고 투치족(여성 포함)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프로파간다는 후투족 남성들의 남성으로서의 자존심을 자극하였고 후투족 남성들이 투치족 여성들을 성적으로 공격하는 데 크게 일조하였다(Gallimore 2008; Human Rights Watch 1996).

1991년부터 2001년까지 내전을 겪은 시에라리온의 경우에도 수천 명의 여성과 소녀가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성폭력에 노출되었는데, 이것은 강간, 성 노예(sexual slavery) 행위를 포함한다. 2002년 PHR(Physicians for Human Rights)의 추정치에 따르면 약 215,000에서 257,000명 가량의 시에라리온 여성들이 분쟁 기간 동안 성폭력에 희생되었다(Human Rights Watch 2002b, 25-26).³ 강간은 분쟁 당사자 양 진영(친정부 시에라리온군과 반란군)에 의해 모두 자행되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반란군이 주로 강간을 저질렀다. 성폭력 범죄는 특별히 잔혹하였고 대부분이 강간 피해자 자신이나 그 가족, 공동체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동반하였다. 반란군은

는 일부 후투족이 학살당했다.

3 시에라리온에서의 전시 강간은 개별강간, 집단강간, 총이나 우산, 절굿공이 등을 이용한 강간을 포함한다.

거의 모든 연령의 여성을 공격하였지만 특히 처녀인 것으로 간주되는 젊은 여자나 소녀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였다. 나이 어린 여성이나 소녀들 중 상당수는 성폭력 행위로 인해 사망하였고, 성인 여성 피해자들 중 일부는 출혈과다나 상처를 통한 감염으로 사망하거나 병들었다(Human Rights Watch 2002b, 3). 또한 수많은 여성들과 소녀들이 반란군에 의해 유괴되어 성적 노예가 되었다. 이들에게는 “남편”이 할당되었고 “남편”이나 다른 반란군 병사에 의해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하였으며, 일부는 “남편”的 아이를 낳았다. 반란군 병사를 위한 음식 만들기, 청소하기, 무기 운반하기 등의 노역에 시달렸을 뿐 아니라 사소한 잘못에도 심하게 벌을 받기 일쑤였다(Human Rights Watch 2002b, 3).

내전이 14년간이나 지속된 라이베리아도 상황이 나쁘기는 마찬가지였다. 특히 주된 분쟁 지역이었던 라이베리아의 남동 지역에서는 극심한 수준의 성폭력이 자행되었다. 그 결과, 라이베리아 전체 여성 중 40%가 분쟁과 관련된 성폭력—강간, 집단강간, 성노예, 육체적 폭행—의 희생자가 되었다. 그 후유증으로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의 소녀 5명 중 4명이 임신 중이거나 아이를 출산하였다(Munala 2007, 36-37). 이 외에도 콩고, 부룬디 등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전시 성폭력이 대규모로 자행되었다(Human Rights Watch 2002a).

이처럼 광범위한 분쟁 지역에서 계획적, 의도적으로, 그리고 그 피해 규모를 밝히기가 힘들 정도로 대규모로 자행된 성폭력 사태는 국제사회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만들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즉각적으로 여론화되었던 보스니아 사태

와는 달리 아프리카 내 무력분쟁 시 성폭력 사례들은 초기에는 국제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들 사례들의 피해 양상과 규모들이 밝혀지게 된 데에는 국제인권단체나 국제여성단체들의 활동이 큰 힘이 되었다.

2. 전시 성폭력 문제의 공론화 및 의제화

전시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 여론화하여 국제적 이슈로 만든 것에는 유엔 및 국제비정구기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국제여성운동은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인권 침해 문제로 제기하고 국제인권운동이나 유엔활동에서 여성인권의 주류화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국제사면위원회나 휴먼라이츠워치와 같은 국제인권단체들은 여성인권 침해 사례에 보다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여성인권 침해 상황을 조사하여 문서화하기 시작하였다(강윤희 2008, 503-504). 국제여성운동계의 여성인권 주류화 전략은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도 팔목할 만한 성과를 가져왔다.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된 인권선언에서는 “여성과 여아의 인권은 양도할 수 없으며 필수불가결하고 불가분한, 보편적인 인권의 한 부분이다”라고 명시되었다. 그뿐 아니라 무력분쟁하 여성인권 침해는 국제인권법 및 인도주의법의 근본적 원칙에 대한 위반이라고 규정되었다. 또한 같은 해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여성폭력철폐선언에서는 무력분쟁하 여성이 폭력행위에 취약함을 명백히 인정하였다.

더 나아가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회의는 무력분쟁하 여성의

취약성과 전쟁수단으로서의 성폭력, 성노예, 강제임신 등으로 인해 여성이 겪게 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인정하였다. 이 회의에서 채택된 행동강령에는 여성과 무력분쟁이 12개 중요 행동 영역 중 하나로 상정되었다. 행동 중심영역 E에서 무력분쟁 및 기타 분쟁으로 인한 여성의 피해 상황을 언급하며 “여성과 소녀들은 사회 속에서의 그들의 위치와 그들의 성(sex)으로 인해 무력분쟁 및 테러리즘에 특히 영향받는다.” 그리고 “분쟁 당사자들은 여성들을 강간하고, 때때로 전쟁과 테러리즘의 전술로 체계적인 강간을 사용”하고 있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여성에 대한 폭력 행사는 넓은 의미에서의 인권 유린이며 인권보장을 규정한 각종 국제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분쟁 지역에서의 여성인권 문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천명하고 있다.

또한 베이징 행동강령은 “여성의 권력구조에의 동등한 접근 및 완전한 참여, 그리고 평화 및 분쟁 방지 및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에서 여성들의 완전한 개입이 평화와 안보의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중심영역 E에서는 무력분쟁 시 여성의 피해를 줄이고 평화 구축 및 유지에 여성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6개의 행동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각 전략 목표별로 정부, 국제기구, 국제비정부기구들이 수행해야 할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함으로써 이들이 분쟁 해결 및 평화 구축 과정에서 성 인지적 관점을 수용하도록 하였다.

베이징 행동강령은 분쟁 해결 및 평화 구축에 성 인지적 관점을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비록 베이징 행동강령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으나, 각 국가별로 행동강령의 지

표 1. 베이징 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 E. 여성과 무력분쟁

전략목표 E1	분쟁 해결에 있어서 의사결정 수준에서의 여성의 참여 증진. 무력분쟁 및 기타 분쟁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그리고 외국 점령군하에 놓여 있는 여성의 보호.
전략목표 E2	과도한 군사비 지출 감소. 무기류의 이용 가능성 통제.
전략목표 E3	비폭력적 형태의 분쟁 해결 촉진. 분쟁 상황 속에서의 인권 침해 사례 감소.
전략목표 E4	여성의 평화문화 육성에의 기여 촉진.
전략목표 E5	난민 여성,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강제이주 여성, 국가 내부의 강제이주 여성들에게 보호, 원조, 훈련 제공.
전략목표 E6	식민지 및 비자치 지역 여성에게 원조 제공.

출처: UN. 1995. "Beijing Platform for Action." <http://www.un.org/womenwatch/daw/beijing/platform/armed.htm>(검색일: 2013. 8. 15)

침들이 수행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준과 근거를 세웠다는 점에서 하나의 이정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1998년 채택된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은 조직적 강간과 성노예가 전쟁범죄에 해당하며, 특히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발생한 강간과 성노예는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여성운동계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전시 성폭력 문제는 국제적 수준에서 공론화되었고 유엔 등 국제기구 활동에서 의제로 상정되었다. 여기서 전시 성폭력 문제를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의 특수한 형태로 다루고,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 자체를 인권 문제로 상정한 전략은 매우 유효했다. 여성인권의 주류화 전략, 즉 여성 이슈와 인권 이슈를 통합하는 전략은 국제여성NGO뿐 아니라 국제인권NGO들까지 여성 폭력 문제, 특히 전시 성폭력 문제에 관심을 가지도록 만드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결국 1990년대

의 각종 분쟁 지역에서의 전시 성폭력 사태에 대한 국제적 관심 고조, 국제여성NGO 및 국제인권NGO들의 여론화 및 이슈화 작업, 유엔 차원에서의 의제화 등이 맞물리면서 여성에 대한 전시 성폭력 문제는 국제규범화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III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본 절에서는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국제규범이 성문화되는 과정을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채택 과정과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 평화, 안보 문제를 다룬 최초의 결의안이자 분쟁 예방에서 평화 구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계에서의 여성의 참여와 보호를 촉구하는 UN SCR 1325를 위시하여, UN SCR 1325의 후속 결의라 할 수 있는 UN SCR 1820, 1888, 1889에 대해 살펴본다.

1. UN SCR 1325

2000년 10월 3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결의 1325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와 같은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었던 것은 평화 과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고, 평화, 안보 분야에서 성 인지적 관점을 포함하도록 유엔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로비 활동을 펼친 국제여성비정부기구들의 노

력 덕분이었다. 특히 인터내셔널 얼러트(International Alert)을 위시한 18개의 단체들은 2000년 5월 ‘여성, 평화, 안보에 대한 비정부기구 워킹그룹(NGO Working Group on Women, Peace, and Security)’을 결성하여 UN SCR 1325의 채택을 촉구하였다.⁴ 이들은 UN SCR 1325 초안 작성에 참여하였고 이 결의안이 채택되도록 지원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예컨대 UN SCR 1325 채택 하루 전날 열린 아리아 포뮬러 회의(Arria Formula meeting)⁵에서 분쟁 지역이었던 시에라리온, 과테말라, 소말리아, 탄자니아의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조직하였다.

UN SCR 1325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무력분쟁, 평화 구축, 안보 문제를 다루면서 여성을 고려한 최초의 결의라는 점에서 매우 독특한 위치를 점한다. 이 결의안은 무력분쟁이 여성에게 미치는 불균형적이고 특별한 영향력을 다룰 뿐 아니라 평화와 안보 영역에서의 여성의 (남성과) 동등하고 완전한 참여가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여성은 무력분쟁의 피해자로 규정하고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 평화 구축의 주체로 상정한다는 점에서 능동적 행위자로서의 여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분쟁의 예방, 분쟁 과정, 평화 협상 및 분쟁 종식 후 평화 구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통합하는 포괄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UN

- 4 워킹그룹에는 평화와 자유를 위한 세계여성연합, 새로운 방향을 향한 여성행동, 국제여성옹호자센터, 난민여성과 아동을 위한 여성위원회, 여성환경발전조직, 인터내셔널 얼러트 등이 참여하고 있다.
- 5 1992년 베네수엘라 대사 디에고 아리아에 의해 시작된 아리아 포뮬러 회의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에 의해 개최되는 비공식 회의이다. 이 회의에서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 NGO 등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이들의 브리핑을 듣는다.

SCR 1325는 이 모든 과정에 성 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UN SCR 1325의 핵심적인 4대 축(pillar)은 1) 분쟁의 예방, 관리, 해결을 위한 모든 의사결정과 평화 과정에의 여성의 참여, 2) 유엔 평화유지활동에의 성 인지적 관점 통합, 3) 무력분쟁 시 여성과 소녀들의 보호, 4) 유엔 시스템과 이행 메커니즘에의 젠더 주류화이다.

1) 참여(Increased participation and representation of women at all levels of decision-making)

분쟁 예방, 분쟁 관리, 분쟁 해결을 위한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증가시키도록 촉구한다. 이것은 평화 관련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기구들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유엔 사무총장이 더 많은 여성들을 사무총장 특별대표나 특사로 임명하도록 촉구하며, 유엔 평화유지활동에도 여성들을 군인, 경찰, 인권 및 인도적 활동 요원으로 참여시킬 것을 촉구한다.

2) UN 평화유지활동, 평화 협상 및 이행 과정에서의 성 인지적 관점 채택 (Gender perspective & training in UN peacekeeping operations and peace support operations)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젠더 관점을 주류화하도록 촉구한다. 평화유지군 배치 전에 평화유지군을 대상으로 성 인지적 훈련을 실시하며, 평화 지원 작전에 참가하는 시민요원들에게도 성 인지적 훈련

을 시킬 것을 요구한다. 평화 협상 및 이행 시 여성과 소녀들의 특수한 요구 등을 고려하는 성 인지적 관점을 적용한다.

3) 보호(Attention to specific protection needs of women and girls in conflict)

무력 갈등 상황에서 성폭력과 다른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소녀를 보호할 특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급한 상황(무력분쟁 동안이나 분쟁 종식 후)에서, 그리고 난민촌과 같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각 국가들은 대량학살, 반인륜적 범죄, 여성과 소녀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포함한 모든 전쟁범죄 책임자들을 기소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범죄를 사면 조항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구한다.

4) 사무총장 및 안전보장이사회 활동 시 젠더 관점 채택(Gender perspective in UN programming, reporting and in SC missions)

유엔 사무총장 보고와 안전보장이사회 활동에 성 인지적 관점을 포함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유엔 사무총장은 무력 갈등이 여성과 소녀에게 미치는 영향, 평화 건설에서 여성의 역할 및 젠더 차원에서 평화 과정과 분쟁 해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야 하며, 안전보장이사회 활동은 여성단체와 협의를 포함하여 분쟁이 성별에 따라 미치는 영향과 여성권리를 고려하여야 한다.

표 2.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 발췌문

-
1. 분쟁의 예방, 관리, 해결을 위한 국가, 지역, 국제적 제도들과 메카니즘에서의 모든 정책결정 수준에서 여성의 대표성 증대를 보장하기를 회원국들에게 촉구한다.
 5.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젠더 관점을 통합시킬 의향을 표명하며, 유엔 사무총장은 적절한 경우 현장 활동(field operations)에 젠더 요소를 포함시키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8. 평화 협정을 협상하고 실행할 때 관련된 모든 행위자들은, 무엇보다도, 디음을 포함한 젠더 관점을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
 - (a) 본국 송환 및 재정착 기간 동안, 그리고 사회 복귀, 재통합, 분쟁 후 재건을 위한, 여성과 소녀들의 특별한 필요;
 - (b) 현지 여성들의 평화 주도권 및 분쟁 해결을 위한 토착적 과정들을 지원하는 조치들과, 모든 평화협정의 실행 메커니즘에 여성을 참여시키는 조치들;
 - (c) 여성 및 소녀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을 보장하는 조치들, 특히 이것들이 현 법, 선거체제, 경찰과 사법부에 관련될 때;
 10. 무력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젠더에 기초한 폭력—특히 강간과 기타 형태의 성적 학대—으로부터, 그리고 무력분쟁 상황 속에서의 모든 다른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소녀들을 보호하는 특별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요구한다;
 13. 무장해제, 동원해제, 그리고 재통합을 위한 계획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성 퇴역전투원과 남성 퇴역전투원의 요구사항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또한 그들의 피부양자들의 요구들을 고려하도록 격려한다.
 16. 유엔 사무총장은 무력분쟁이 여성과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평화 구축에서의 여성의 역할, 평화 과정과 분쟁 해결에서의 젠더 요인들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도록 요청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물에 대해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것이 유엔 회원국 모두에게 이용 가능하게 제공될 것을 또한 요청한다.
 17. 유엔 사무총장은 평화 유지 사명과 여성 및 소녀에 관련된 모든 다른 측면들을 통틀어 젠더 주류화 진전 상황을, 적절한 경우에,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그의 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한다.
-

출처: 존 베일리스·스티브 스미스 편저 2006, 692

2. UN SCR 1325 후속 결의들

1) UN SCR 1820

UN SCR 1820은 시민사회, UN 기구, UN 회원국 등의 수년에 걸친 옹호 활동 끝에 2009년 6월 19일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UN SCR 1820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무력분쟁 시 발생하는 성폭력을 국제평화와 안보 이슈로 인정하고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을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

한 변화는 성폭력이 계속되는 곳에서는 지속 가능한 평화가 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UN SCR 1820은 성폭력을 전쟁의 전술로 인정한 최초의 문건이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를 요구할 책임이 있으며 평화유지군 요원의 훈련 등을 통해 이러한 잔혹한 행위에 대한 유엔 차원의 예방과 보호 조치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 결의안은 성폭력과 여성의 참여와 세력화 간의 연계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2) UN SCR 1888

UN SCR 1888은 2009년 9월 30일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안보리는 분쟁 시 성폭력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이 결의안 채택을 통해 유엔 차원에서의, 그리고 개별 국가 수준에서의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즉 성폭력 사태에 대한 비난의 수준을 넘어서서 전시 성폭력 사태가 근절되도록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힘이다.

안보리는 2009년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에 기초하여 무력분쟁 시 여성과 여아에 대한 성폭력 문제 해결에서 진전이 더디다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분쟁 시 성폭력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먼저 안보리는 UN 회원국에게 전쟁의 전술로서 성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였다. 특히 성폭력 가해자 중 일부만이 재판받고 처벌받았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하며 개별 국가들이 이들을 기소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분쟁 중의 각종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처벌 종식이 관건이라는 것이다.

또한 유엔 사무총장은 특별 대표를 임명하여 “분쟁 시 성폭력에 반대하는 유엔행동(UN Action Against Sexual Violence in Conflict)”이라는 기구 간 활동을 관장하도록 하고, 무력분쟁 시 성폭력 상황이 발생되면 신속하게 전문가팀을 배치하도록 요구되었다. 안보리는 유엔 차원에서 전시 성폭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외에도 안보리는 강간 및 성폭력으로부터 여성 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을 만들어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젠더자문관(gender adviser)이나 여성보호 상담자들을 배치하도록 결정하였다. 또한 안보리는 회원국에게 평화유지 작전 시 더 많은 여성 군인이나 경찰인력을 배치도록 독려하였고, 사무총장에게 유엔평화유지활동 시 발생하는 성적 착취와 학대에 대해 관용제로(zero tolerance) 정책을 취하도록 요청하였다. 한편 유엔의 모든 평화 협상 의제에 성폭력 이슈를 포함시키도록 촉구하였다.

3) UN SCR 1889

UN SCR 1889는 UN SCR 1325 채택 9주년을 맞아 열린 토론회를 거쳐 2009년 10월 5일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UN SCR 1325 채택 10주년을 앞두고 안보리는 분쟁의 예방과 해결, 평화 구축 과정에서의 여성의 참여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제시하고자 UN SCR 1889를 채택하였다.

UN SCR 1889는 분쟁의 예방, 해결, 분쟁 후 모든 과정에서의 여성의 과소대표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유엔 차원에서의, 그리고 개별 국가 및 국제/지역조직에서의 여성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무력분쟁 이후 재건 과정에서의 성 주류화를 보장

하도록 촉구하면서, 분쟁 후 여성 역량을 강화하며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보건 등의 영역에서 여성의 필요사항이 고려되도록 촉구하고 있다. 또한 평화구축위원회 및 평화구축지원사무소가 성 평등과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자원을 동원할 것을 독려하며, 사무총장이 평화 구축 과정의 초기 단계부터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서 UN SCR 1889는 사무총장에게 결의안 1325호의 이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일람표를 제시하도록 요청하고 있는데, 이 지표들은 유엔기구들, 국제 및 지역기구들, 그리고 회원국이 1325 이행보고서를 제출할 때 기준으로 사용될 것이다. 따라서 이 결의안은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의무 수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고 과정에 초석을 놓았다고 평가된다.

4) UN SCR 1960

유엔 사무총장의 2010년 보고서에 입각하여 UN SCR 1960은 12월에 채택되었다. 이 결의안에서 안보리는 성폭력 행위를 예방하고 그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모든 무력분쟁 당사자들에게 즉각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완전히 중지할 것을 반복해서 요구하였다. 유엔 차원에서는 사무총장에게 성폭력을 행사하였거나 이에 대해 책임이 있는 무력분쟁 당사자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성폭력 관련 정보를 UN 안보리 제재위원회와 공유하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분쟁 시 성폭력에 관한 모니터링, 분석, 보고 시스템을 만들도록 요구하였다. 한편 UN 채

제 내의 관련 부처들뿐 아니라 ‘분쟁 시 성폭력에 반대하는 UN행동’를 구성하는 기구들이 분쟁 시 성폭력 담당 사무총장 특별 대표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독려하였다. 분쟁 시 성폭력 담당 사무총장 특별 대표에게는 UN SCR 1888에 따라 성폭력에 관한 브리핑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그리고 사무총장에게는 UN SCR 1820과 1888 이행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안보리에 지속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와 더불어 UN 회원국에 보다 많은 여성 군인 및 경찰 인력을 UN 평화유지활동에 배치시키도록, 그리고 성폭력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받은 모든 군인 및 경찰 인력을 제공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IV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호 실행 및 확산 과정

1. UN SCR 1325 실행 체계와 문제점

UN SCR 1325 및 후속 결의들은 기존의 국가 중심적 안보 시각에서 벗어나 국제적, 국가적, 개인적 차원의 안보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다층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실제 UN 등의 국제기구, 국제비정부기구, 정부, 지역민간단체가 협력 협조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상정하고 있다. 따라서 UN SCR 1325 및 후속 결의들은 다양한 행위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즉 국제 수준(UN, 평화유지군, 기타 국제기구, 국제비정부기

구), 지역 수준(EU와 같은 지역기구), 국가 수준(정부, 군, 경찰 등), 국가 하위 수준(분쟁 당사자, 민족 집단 등), 풀뿌리 수준(지역여성단체, 기타 민간단체), 개인(여성과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위자를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UN SCR 1325 실행 체계는 매우 포괄적이고 복잡하다. 예컨대 UN SCR 1325 및 후속 결의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유엔 사무총장, 유엔 회원국가, 분쟁 당사자들, 국제비정부기구 및 지역단체들이 무력분쟁 지역에서의 여성 및 소녀의 보호, 평화 과정에서의 여성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취해야 할 제반 조치들을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UN SCR 1325 채택 후 10년 동안 UN SCR 1325 실행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기울어졌으며 그 성과는 무엇인가? UN SCR 1325 채택 10주년을 맞아 이루어진 UN 젠더이슈와 여성 진출 담당 특별보좌관의 성명에 따르면, 안보리는 여성, 평화, 안보 관련 공개토론회 및 아리아 포뮬러 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하였으며, UN이 UN 시스템 차원에서의 행동계획을 채택하여 실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개별 국가들도 국가행동계획을 채택하도록 요구했다(Mayanja 2010).⁶ 결의안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유엔 사무총장은 2002년부터 매년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UNIFEM 전문가들의 권고 및 평가안 등도 유엔에 제출되었다. 한편 안보리는 국가별 보고서에 성 인지적 관점을 도입했다. 1325호 실행을 옹호하는 UN 회원국들은 유엔 안에서 1325 친구들(Friends of 1325)이라

6 실제 UN은 2005~2007년간 UN 차원의 행동 계획을 채택하였으며 2008~2009년간 계획도 마련하였다. 또한 회원국 국가들의 실행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천여 개의 활동을 수행하였다.

는 비공식 특별그룹을 형성하여 UN SCR 1325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실행 촉진을 격려하였다.⁷

지역 수준에서도 1325 실행을 위한 여러 계획이 채택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은 EU와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의 활동이다. 예컨대 유럽연합은 'EU 1325 파트너십'을 만들어 군, 학계, 민간단체를 포함한 지역적, 국가적 기구들을 연합하여 인식 제고 및 유럽 지역 차원에서의 실행 노력을 조정하였다. 아프리카연합은 유럽연합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개별 아프리카 국가들의 1325 실행 노력을 지원하였다(Mayanja 2010).

국가 수준에서도 1325 실행을 위한 노력들이 기울여졌다. 2010년 8월 당시 18개 국가들이 국가행동계획을 채택하였다. 독일의 경우는 여성, 평화, 안보 전략을 젠더 평등에 관한 기존 국가 정책에 통합시켰고, 스웨덴은 '젠더세력(Genderforce)'을 만들어 정부기관과 NGO들이 1325 실행을 위한 공동의 접근 방식을 개발하도록 했으며 국제적 미션 수행 시 훈련과 계획과 같은 이슈에 집중하였다(Mayanja 2010).

한편 비정부기구들은 인식 제고 및 옹호 활동을 펼쳤는데,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정보를 제공하거나 워크숍이나 회의를 조직하였다. 실제 UN SCR 1325 채택 이후 여성단체들은 이 결의안의 이행을 모니터하고 결의안이 완전하고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앞서 언급한 '여성, 평화, 안보에 대한 비정부기구 워킹그룹'은 여성의 참여, 갈등 예방, 여성과

7 캐나다는 1325 친구들 조직을 주도했고 이 그룹의 핵심 국가로 활동하고 있다.

여야의 인권 보호를 옹호하며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실행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 워킹그룹은 분쟁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인권 옹호자들과 유엔 본부의 정책결정자 간에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2004년과 2005년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 이행 성과에 대해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외에도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와 같은 국제NGO, 그리고 캐나다 평화구축조정위원회(Canadian Peacebuilding Coordinating Committee)나 독일 여성안전보장이사회(Women's Security Council, Germany) 등에서 자국의 결의안 이행 수준에 대해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외에 평화와 자유를 위한 세계여성연합이 운영하는 평화여성(PeaceWomen) 프로젝트나, UNIFEM이 제공하는 여성, 전쟁, 평화 웹 포털(<http://www.womenpeace.org>), 국제화해친우회가 실시한 여성평화형성자 프로그램 등은 관련 정보 제공, 세미나와 교육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정경란 2006, 3-4).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과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진전은 “극단적으로 느린 속도로” 이루어졌다(Mayanja 2010). UN 사무총장 보고서에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듯이, 전시 성폭력 사태 발발을 예방하고 여성을 전시에 보호하고 평화 과정에 참여시키는 1325호의 주요 목표는 쉽게 달성되지 않았다. 2009년 UN 사무총장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은 평화 협상 테이블(peace table)에 거의 부재하며, 대부분의 갈등 지역에서 제3자 조정자, 혹은 UN 대표로서 상당히 과소대표되어 있다(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 2009, 4).” 또한 1992년 이후의 21개 주요 평화 과정에 대한 UNIFEM의 2009년 평가(review)에 따르면 평화협정에 서명

하는 자의 오직 2.4%만이 여성이었다(UNIFEM 2009). 뿐만 아니라 2000년대 들어서 내전이 발발한 지역 내에서 계속적으로 성폭력 사태가 발생하였다. 수단, 다르푸르 분쟁, 코트디브아르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Amnesty International 2004). 따라서 UN SCR 1325의 실행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ICAN 외 2010).

UN SCR 1325 실행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은 사실 결의안 채택 초기부터 쉽게 예측할 수 있었던 사안이다. UN SCR 1325의 이상적이고 포괄적인 측면은 현실에서의 실행을 어렵게 하였다. 무엇보다 분쟁 당사국 혹은 당사자가 UN SCR 1325를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지 않는다면 분쟁 시 성폭력 근절 및 여성의 평화 협상 과정에의 참여는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유엔 젠더이슈와 여성진출 담당 특별보좌관이 지적하였듯이, 안보리는 UN 차원의 실행에 집중함으로써 개별 국가들, 그리고 시민사회의 활동의 중요성을 간과하였다. UN 차원의 행동계획은 자원을 동원하고 계획된 활동을 펼치는 데 필요한 공동작업을 도출하지 못하였다. 또한 UN 차원에서 회원국이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만들 수 있는 단일한 메카니즘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도 UN SCR 1325 실행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Mayanja 2010).

실제로 UN SCR 1325 실행의 결정적인 문제점은 회원국 국가들이 1325 실행에 대해 전반적으로 무관심했기 때문이다. 캐나다와 같은 몇몇 선진국이나 분쟁 시 성폭력 사태를 경험한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UN SCR 1325를 적극 응호하고 그 실행에 앞장섰지만, 그 외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UN SCR 1325의 의미나 내용

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UN SCR 1325 실행에 매우 소극적이었다(ICAN 외 2010). 이러한 맥락에서 1325 실행을 위해서는 개별 국가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다.

2. 국가행동계획 수립

2010년 UN SCR 1325호 채택 10주년을 맞아 새롭게 1325호 실행을 위한 논의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UN은 개별 국가로 하여금 1325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을 채택하도록 강력히 촉구하였다. 국가행동계획 속에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함으로써 실행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고하도록 권고하고, 동시에 예산을 책정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국가행동계획은 유엔 사무총장의 2004년 보고서 이후 덴마크(2005년)를 필두로 채택되기 시작하였는데, 2009년까지 총 16개 UN 회원국이 국가행동계획을 채택하였다. 상기 16개 국가는 덴마크(2005년 채택, 2008년 개정), 영국(2006년 채택, 2010년 개정), 노르웨이(2006년), 스웨덴(2006년 채택, 2009년 개정), 스위스(2007년 채택, 2010년 개정), 네덜란드(2007년 채택, 2011년 개정), 오스트리아(2007년 채택, 2012년 개정), 스페인(2008년), 아이슬란드(2008년), 핀란드(2008년), 우간다(2008년), 벨기에(2008년), 코트디브아르(2008년), 라이베리아(2009년), 포르투갈(2009년), 칠레(2009년)였다. 2010년 이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캐나다, 에스토니아, 프

랑스, 이탈리아, 네팔, 필리핀, 르완다, 시에라리온, 미국, 호주, 독일 등 24개국이 추가되어 2013년 3월 현재 총 40개 국가가 국가행동계획의 채택 및 개정을 마친 상태이다.

2010년 이전에 국가행동계획을 채택한 16개국을 살펴보면, 12개 국가가 유럽 국가였으며, 3개국은 분쟁을 경험했던 아프리카 국가였고, 1개국만이 라틴아메리카 국가였다. 이것은 남녀평등지수가 높은 유럽 국가들이 여성, 평화, 안보 문제에 민감하며 적극적인 수용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분쟁을 실제 경험했던 국가들이 UN SCR 1325의 의미와 필요성을 더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적인 수용 태도를 보였다. 라이베리아, 우간다, 코트디브아르, 시에라리온 등의 아프리카 국가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실제 분쟁 시 성폭력 사태를 경험한 분쟁 국가들이었다. 반면, 미국, 호주 등의 국가들은 국가행동계획 채택에 적극적이지 않다가 최근 1325 실행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높아지자 뒤늦게 행동계획을 채택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네팔만이 유일하게 국가행동계획을 채택하였다는 사실이다. 일본,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 주요 3개국은 높은 경제 수준과 교육 수준을 보이면서도 아직까지 국가행동계획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유럽 국가들은 개별 국가 수준에서도 1325호 실행 및 국가행동계획 마련에 적극적이었지만, 유럽연합 수준에서도 별도의 조치를 통해 1325호 실행을 촉진하고 있다. 2008년 12월 EU이사회는 UN SCR 1325와 1820 실행을 위한 EU 전략의 개요를 보여주는 2개의 문서를 채택하였다. 이것은 “UN SCR 1325와 1820 실행에 대한 EU의 포괄적 접근(Comprehensive EU Approach),” “유럽

안보와 방어(defence)정책 맥락에서의 UN SCR 1325 및 이를 강화하는 1820의 실행”이다(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08a, 2008b). 포괄적 접근(CA)이라고 언급되는 이 문서들은 국가행동 계획 및 전략에 있어서 각 국가 수준에서 이미 존재하는 것을 보완하면서 UN SCR 1325 실행에 대한 EU의 공통된 접근 방식을 보여주었다. 한편 EPLO(European Peacebuilding Liaison Office)는 2010년 6월 UN SCR 1325 실행 관련 유럽 국가 21개국의 정책과 실행 내용을 출간한 바 있다(EPLO 2010). 동년 9월에는 시민사회 조직(Civil Society Organizations: 이하 CSO)이 유럽 차원의 실행에 관련하여 입장표명문서(position paper)를 출판하였다(CSO 2010). 유럽 각국의 80개 이상의 시민사회조직과 네트워크가 이 문서 작성에 참여하였으며 EPLO가 조정 역할을 하였다. 이 문서에서 EU 차원과 EU 회원국가 차원에서 여성, 평화, 안보 관련 규범을 실행하기 위한 10개의 제안이 제시되었다.

한편 UN SCR 1325 실행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은 국가행동계획의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2010년 7월 EU 이사회는 EU의 UN SCR 1325 및 1820 실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을 선정하여 제시하였다(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10). 이 지표들에 따라 EU 이사회는 2011년 5월 실행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EU 국가들은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UN 태스크포스 설립, UN SCR 1325 실행에 대한 EU 회원국의 연간 경험 교환, 젠더 관점 훈련과 같은 항목들을 이미 실행에 옮겼다. 반면 평화 과정에서의 여성의 참여에 대한 EU의 정치적 지지 보장, EU 정책결정 지위에서의 여성의 포함 등과 같은 사

항들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었다(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11).

3. 여성, 평화, 안보의 국제규범의 국내 수용 과정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UN SCR 1325호가 2000년에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국제적 노력은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경우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한국 정부가 1325호 친구들 그룹의 일원으로서 UN SCR 1325호 및 후속 결의 1820호, 1888호, 1889호, 1960호 채택을 지지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곧 UN SCR 1325의 정신과 취지를 국가 차원에서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 UN SCR 1325는 오랫동안 한국에서 거론되지 않았고 거의 아무런 관심도 받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UN SCR 1325에 대한 최초의 관심은 한국여성평화운동계로부터 나왔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대표로서 여성평화운동에 오랫동안 관여해왔던 김이현숙은 여성재단 이사장 박영숙과 더불어 2006년 12월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과 한국의 평화와 화합에 기여하고자 1325피스클럽을 발기하였다. 1325피스클럽은 1325호 및 후속 결의의 한국어 번역 등에 노력을 기울이기는 하였지만(1325피스클럽 2012), 1325호 관련 이슈를 대중적으로 알리는 데 성공하지는 못하였다. 한편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한국여성단체연합과 더불어 2010년 11월 외교통상부에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의 UN SCR 1325호 이행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질의를 하였고 또 1325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작성을 촉구하였다(정경란 2010).

이후 한국여성평화운동계는 국회를 통한 관련 이슈의 의제화를 모색하였다. 2011년 6월 2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최영희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32명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른 국가행동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평화를만드는여성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 발의를 환영한다는 취지의 논평을 내놓기도 하였다. 같은 해 7월 8일에는 신낙균 의원실 주최로 평화·안보 분야에서의 여성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과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되었다. 이 토론회에서는 영국대사관과 미국대사관에서 각기 영국, 미국의 사례에 대해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신속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자, 2012년 2월 27일 또 다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호에 따른 국가행동계획 수립 촉구 결의문」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국회에서의 거듭되는 국가행동계획 수립 요구에 직면하여 한국 정부는 UN SCR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정부의 국가행동계획 초안 마련 과정은 철저히 정부 주도형이었다. 외교통상부를 주무부처로 하여 국방부, 여성가족부, KOICA, 행안부, 통일부, 법무부의 제안을 수렴, 취합하는 형태로 초안이 마련되었다. 2013년 1월 25일 외교통상부 국제기구국 주도로 여성단체 대표들과의 첫 간담회 자리가 마련되었다. 여성계를 대표하는 민간 인사들은 외교통상부가

마련한 초안의 구체적인 내용에서도 지적을 하였지만, 무엇보다도 초안이 만들어진 방식, 즉 정부 부처들의 의견을 단순 취합한 후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것에 대해 가장 큰 문제를 제기하였다. 3월 28일에는 여성가족부 주최로 2차 간담회가 열렸는데, 시민사회 대표들은 국가행동계획의 초안 작성에서부터 후일 이의 실행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1325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민관 합동의 위원회 설치를 재차 요구하였다. 또한 1325 국가행동계획을 마련하고 관장하는 주무부처가 외교부가 되어야 할지, 여성가족부가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편 여성계 대표들은 1325호의 의의와 내용을 숙지하고 정부 측에 조율된 목소리를 내고자 ‘1325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는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여인지사, 여성평화외교포럼,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등이 참가했다. 현재 ‘1325 네트워크’는 역량 강화 전략 워크숍 개최, 토론회 개최, 국가행동계획 초안 검토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3년 4월 10일 ‘1325 네트워크’와 국회의원 연구단체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국회 토론회에는 국회의원, 여성계 인사들, 그리고 정부 관련부처 실무자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하였다. 앞서 열렸던 2차례의 간담회 때보다 훨씬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응답이 이루어졌다. 더욱이 이 토론회에서는 정부 측에서 그간의 시민사회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민관합동 협의체를 설치할 의사를 밝혀 국가행동계획 수립

방식에 변화가 생겼음을 시사했다. 현재 1325호 국가행동계획 민관협의체가 발족하여 국가행동계획의 내용을 검토 중이며 올해 말까지 국가행동계획 최종본을 도출할 예정이다.

V 여성, 평화, 안보의 국제규범, 그 의의와 한계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이 여성의 경험을 반영하고 여성의 관점에서 본 국제정치학을 주창하였듯이, 유엔은 여성의 경험을 포함시키고 여성을 주체로 상정하는 국제규범을 만들고 있다. 특히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호는 전시 성폭력 근절, 평화 구축에 여성의 참여를 강조하는 획기적인 것이었다. 이는 무력분쟁과 평화 구축을 남성들의 점유물로 간주하였던 기존의 시각을 뒤집는 것이었다. 1325호 결의안 채택 과정은 국제기구(UN)와 국제비정부기구(여성단체들과 인권단체들)가 글로벌 거버넌스를 이룬 전형적인 사례였다. 그러나 1325호 결의안의 실행은 추가 결의안의 채택, 실행 결과 모니터링 등에도 불구하고 결코 쉽지 않았고 실제 국제정치 관행을 바꾸는 데 성공하지 못하였다. 유엔 차원의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별 국가들이나 분쟁 당사자들이 UN SCR 1325 실행에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실행 여부가 1325호 정신을 살리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이에 유엔은 회원국들에게 1325호 이행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국가행동계획을 채택하도록 권고하였고 2013년 현재까지 40여 개국이 국가행동계획을 채택 혹

은 개정하였다.

이 글은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국제규범이 유엔 차원에서 어떻게 형성되며 이것이 개별 국가 차원으로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볼 때,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가 얼마나 철저히, 그리고 완전하게 이행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와는 별도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국제규범이 형성된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성, 평화, 안보에 대한 인식의 재고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전쟁이나 평화와 같은 이슈를 여성과는 무관한, 혹은 성 중립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던 기존의 시각은 계속 도전을 받을 것이다. 여성(과 소녀)들이 그들의 성으로 인하여 각종 분쟁으로부터 차별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여성 이슈가 평화 및 안보 이슈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여성이 분쟁 해결 및 평화 구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며, 또한 그 여지를 만들어낸다.

물론 현실 국제정치 관행은 그리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UN SCR 1325 채택 이후의 10년이 그러했듯이, 향후의 10년도 매우 느린 속도의 변화만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N SCR 1325호의 실패를 속단할 필요는 없다. UN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 국제여성운동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 여성인권 개념의 확립, 여성주의적 안보 개념의 확립, 여성평화운동의 발전 등이 어우러질 때, 여기에 개별 국가들의 책임성 있는 실행을 강요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만들어진다면, 변화는 더디지만 일어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인식 재고는 국제정치학

의 관련 연구 영역을 확대시킬 것이다. 이미 여성과 안보를 연관시키거나 분쟁 해결 및 평화 조성·구축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상당히 진전되고 있으며(Moser 외 2001; Giles 외 2004; Mazurana 외 2005; Cockburn 2007; Binder 외 2008; Gallimore 2008; Gumru 외 2009; Tripp 외 2009; Chedelin 외 2011; Fritz 외 2011), 향후 이 분야에서의 다양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연구는 기존의 남성 중심적 국제정치학을 수정, 보완할 것이며, 국제정치학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것이다.

참고문헌

- 강윤희. 2008. “글로벌 여성인권 거버넌스와 러시아: 행위자의 다변화와 상호작용.” *『한국정치학회보』* 42집 4호, 299-520.
- _____. 2011. “전쟁·평화·안보 그리고 여성.” 김민정 외. *『젠더정치학』*, 251-274. 서울: 한울아카데미.
- 이신화. 2004. “인간안보와 여성: 인도적 위기상황 및 개발문제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10권 2호, 121-157.
- 정경란. 2006. “평화 형성을 위한 여성들의 국제활동.” *『국제리뷰』* 06-9, 1-4.
- _____. 2010. “UN 안보리 결의 1325호의 의미와 이행방안.” 시민평화포럼. *『다시 평화를 묻는다』*. 서울: 백산서당.
- 존 베일리스·스티브 스미스 편저. 하영선 외 옮김. 2006. *『세계정치론』* 3판. 서울: 을유문화사.
- 1325피스클럽. 2012. *『2012년도 정기총회 자료집』*. 서울(2월).
- Amnesty International. 2004. *Sudan, Darfur Rape As a Weapon of War: Sexual Violence and Its Consequences*. London, AFP re/076/04, <http://www.amnesty.org/en/library/asset/AFR54/076/2004/en/f66115ea-d5b4-11dd-bb24-1fb85fe8fa05/afr540762004en.pdf>(검색일: 2012년 2월 9일).
- Binder, Christina, Karin Lukas and Romana Schweiger. 2008. “Empty Words or Real Achievement? The Impact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on Women in Armed Conflict.” *Radical History Review* Vol. 101(Spring), rhr.dukejournals.org/content/2008/101/22.full.pdf(검색일: 2013년 2월 2일).
- Chedelin, Sandra I. and Maneshka Eliatamby. 2011. *Women Waging War and Peace: International Perspectives of Women's Roles in Conflict and Post-Conflict Reconstruction*. New York: Continuum.
- Cockburn, Cynthia. 2007. *From Where We Stand: War, Women's Activism and Feminist Analysis*. London: Zen Books.
-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08a. “Comprehensive Approach to the EU Implementation of UNSCR 1325 and 1820 on Women, Peace and Security.” Brussels, <http://register.consilium.europa.eu/pdf/en/08/st15/st15671-re01.en08.pdf>(검색일: 2011년 9월 28일).
- _____. 2008b. “Implementation of UNSCR 1325 as Reinforced by UNSCR 1820 in the Context of European Security and Defence Policy.” Brussels, <http://register.consilium.europa.eu/pdf/en/08/st15/st15782-re03.en08.pdf>(검색일: 2011년 9월 28일).
- _____. 2010. “Indicators for the Comprehensive Approach to the EU Implementation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 1325 and 1820 on Women, Peace and Security." Brussels, <http://register.consilium.europa.eu/pdf/en/10/st11/st11948.en10.pdf> (검색일: 2011년 9월 29일).
- _____. 2011. "Report on the EU-indicators for the Comprehensive Approach to the EU implementation of the UN Security Council UNSCRs 1325 and 1820 on Women, Peace and Security." Brussels, <http://register.consilium.europa.eu/pdf/en/11/st09/st09990.en11.pdf> (검색일: 2011년 9월 28일).
- CSO. 2010. "10 Points on 10 Years UNSCR 1325 in Europe: CSO Position Paper on Europe-wide Implement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http://www.eplo.org/assets/files/2.%20Activities/Working%20Groups/GPS/CSO_Position_Paper_10_Points_on_10_Years_UNSCR_1325_in_Europe_1008.pdf (검색일: 2011년 9월 28일).
- European Peacebuilding Liaison Office (EPLO). 2010. "UNSCR 1325 in Europe: 21 Case Studies of Implementation." Brussels: EPLO, <http://www.eplo.org/eplo-publications.html> (검색일: 2011년 9월 17일).
- _____. 2011. "Implementation of UNSCR 1325 in Europe," Brussels: EPLO, <http://www.eplo.org/implementation-of-unscr-1325-in-europe.html> (검색일: 2011년 9월 28일).
- Fritz, Jan Marie, Sharon Doering and F. Belgin Gumru. 2011. "Women, Peace, Security and the National Action Plans," *Journal of Applied Social Science* 5, No. 1 (Spring), 1-23.
- Gallimore, Rangira Bea. 2008. "Militarism, Ethnicity, and Sexual Violence in the Rwandan Genocide." *Feminist Africa* 10, 9-29.
- Giles, Wenona and Jennifer Hyndman. 2004. *Sites of Violence: Gender and Conflict Zon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umru, F. Belgin and Jan Marie Fritz. 2009. "Women, Peace, and Security: An Analysis of the National Action Plans Developed in Response to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Societies Without Borders*, Vol. 4, No. 2, 209-225.
- Human Rights Watch. 1996. "Shattered Lives: Sexual Violence During the Rwandan Genocide and its Aftermath," www.hrw.org/reports/1996/Rwanda.htm (검색일: 2011년 9월 28일).
- _____. 2002a. "The War Within the War: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in Eastern Congo," New York, <http://www.hrw.org/sites/default/files/reports/congo0602.pdf> (검색일: 2012년 2월 9일).
- _____. 2002b. "'We'll Kill You If You Cry': Sexual Violence in the Sierra Leone Conflict." London, <http://www.hrw.org/sites/default/files/reports/sierleon0103.pdf> (검색일: 2012년 2월 9일).
- International Civil Society Action Network (ICAN) and the MIT Center for

- International Studies. 2010. "What the Women Say: Participation and UNSCR 1325," http://web.mit.edu/cis/pdf/WomenReport_10_2010.pdf(검색일: 2013년 2월 5일)
- Mayanja, Rachel. 2010. "10th Anniversary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2000): Identifying Progress and Closing Gaps," <http://www.un.org/womenwatch/osagi/pdf/Alphbach-Retreat-03September2010.pdf>(검색일: 2013.6.30)
- Mazurana, Dyan, Angela Raven-Roberts and Jane Parpart. 2005. *Gender, Conflict, and Peacekeeping*.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 Moser, Caroline O.N. and Fiona C. Clark. 2001. *Victims, Perpetrators or Actors?: Gender, Armed Conflict and Political Violence*. London: Zen Books.
- Munala, June. 2007. "Challenging Liberian Attitudes towards Violence against Women." *Forced Migration Review* 27(January), 36-37, <http://www.fmreview.org/FMRpdfs/FMR27/full.pdf>
- Tickner, J. Ann. 1991. "Hans Morgenthau's Principles of Political Realism: A Feminist Reformulation." Rebecca Grant and Kathleen Newland, eds. *Gender and International Relations*, 27-40.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Tripp, Aili Mari, Isabel Casimiro, Joy Kwasiga and Alice Mungwa. 2009. *African Women's Movements: Transforming Political Landscap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UNIFEM. 2009. "Women's Participation in Peace Negotiations: Connections between Presence and Influence," http://www.peacewomen.org/assets/file/Themes/unifem_handout_women_in_peace_processes_brief_april_20_2009.pdf(검색일: 2012년 9월 5일).
-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 2009.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Women, Peace and Security," http://www.peacewomen.org/assets/file/SecurityCouncilMonitor/Reports/WPS/wps_s2009_465.pdf(검색일: 2011년 9월 일).
-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2000. "Resolution 1325 on Women, Peace and Security," www.un.org/events/res_1325e.pdf(검색일: 2011년 9월 30일).
- _____. 2008. "Resolution 1820 on Women and Peace and Security," http://www.peacewomen.org/themes_theme.php?id=16&subtheme=true(검색일: 2011년 9월 30일).
- _____. 2009. "Resolution 1888 on Women and Peace and Security," http://www.peacewomen.org/themes_theme.php?id=62&subtheme=true(검색일: 2011년 9월 30일).
- _____. 2009. "Resolution 1899 on Women and Peace and Security," http://www.peacewomen.org/themes_theme.php?id=63&subtheme=true(검색일:

2011년 9월 30일).

UN. 1995. "Beijing Platform for Action." <http://www.un.org/womenwatch/daw/beijing/platform/armmed.htm>(검색일: 2013. 8. 15)

필자 소개

강윤희 Kang, Yoonhee

국민대학교 국제학부(Schoo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Kookmin University) 조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학사 및 석사, 영국 글라스고우 대학교 정치학 박사

논저 “글로벌 여성인권 거버넌스와 러시아: 행위자의 다변화와 상호작용”, “여성과 평화 표준 형성: 한국여성평화운동을 중심으로”, 『젠더정치학』.

이메일 yhkang@kookmin.ac.kr